

토석 [] 매입
[] 무상양여 신청서

(앞쪽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일		처리기간 30일	
신청인	성명					생년월일	
	주소					전화번호	
산지 소재지							
산지편입 면적	토석채취장	부대시설					완충구역
		계	산물처리장	진입로	관리사무소	그 밖의 시설	
	m ²	m ²	m ²	m ²	m ²	m ²	m ²
토석채취 계획	용도	토석의 종류	신청량			채취방법	
			매장량	가채매장량	반입량		
			m ³	m ³	m ³		
토석반출기간							
매매대금							
채취지역 부근의 사항							
무상양여를 받을 사유							

「산지관리법」 제3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의 []매입 []무상양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
국립수목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
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* 첨부서류, 수수료: 뒤쪽 참조

첨부서류	1. 매입의 경우 가. 사업계획서{토석채취구역현황, 채취방법,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(석재에 한정합니다), 토석처리계획(석재에 한정합니다), 연차별 생산·이용계획,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} 1부 나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.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(求積圖) 1부 라.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(쇄골재용 석재의 굴취·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마.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(건축용·공예용·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·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2. 무상양여의 경우 가. 사업계획서{토석채취구역현황, 채취방법,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(석재에 한정합니다), 토석처리계획(석재에 한정합니다), 연차별 생산·이용계획,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} 1부 나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. 다만,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. 「산지관리법」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.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(쇄골재용 석재의 굴취·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마.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(건축용·공예용·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·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